

서울특별시 동북 어르신돌봄종사자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1464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16년 10월 31일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장

1. 제안이유

전문 법인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양질의 장기요양요원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, 서울특별시 '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'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시설 개요

- 시 설 명 : 서울특별시 동북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
- 소 재 지 : 서울시 동대문구 장안로25
- 시설규모 : 209.31 m² (지상6층)
 - 사무공간, 상담실, 회의실, 교육장, 프로그램실

나. 주요 위탁내용

- 위탁기간 : 3년 (2017. 2. ~ 2020. 1.)
- 운영사업(센터의 기능)
 -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제고 및 권익의 향상에 관한 사항
 - 장기요양요원의 육체적·정신적 스트레스를 예방·해소하기 위한 건강 증진에 관한 사항
 - 직무향상교육 등을 통한 장기요양요원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
 -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리향상과 관련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
- '17년 예산액 : 370백만원
- 수탁기관 선정방법 : 공개모집(신규위탁)

다. 민간위탁 추진 근거

- 서울특별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제9조(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) 및 제11조(운영의 위탁)

라.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

- 센터의 운영은 어르신돌봄종사자들의 역량강화, 인식개선, 권익옹호 등에 관한 사항으로 전문적인 지식과 다년간의 경험이 있는 민간전문기관에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함
- 따라서, 전문적인 노하우를 축적한 민간자원을 활용하여 양질의 장기요양요원 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법인에게 위탁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서울특별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제9조 (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) 제1항
시장은 장기요양요원 근무환경의 질적향상과 신체적·정신적 건강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교육 상담 등의 지원을 통해 돌봄서비스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- 서울특별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제11조 (운영의 위탁)
시장은 제9조에 따른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치구,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※ 작성자 : 어르신복지과 어르신요양보호팀 김형진 (☎ 2133-7431)